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국토종합계획(2011~2020) 및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등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와 구미시 인구증가, 제5산단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해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

2.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기준년도
 - － 당초 : 2003년, 변경 : 2010년
- 목표연도 : 2020년(변경없음)
- 위치 : 구미시 행정구역 전역
- 면적
 - － 당초 : 615.25km², 변경 : 615.55km²
(2010년 구미시 행정구역 면적 반영)

□ 구미시 미래상(변경없음)



- Hightech-City : 첨단 전자산업의 메카
 - 세계적인 첨단산업시설 및 연구개발의 거점도시로 성장하여 한반도와 경북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 담당
 -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화로 첨단 도시공간 조성
- Eco-City : 청정생태도시
 -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보전 정책 수립
 -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통합 네트워크 구축
 -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요인, 즉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건설 목표
- Young-City : 활력 있는 젊은 도시
 - 우수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조성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복지서비스체계 구축
 - 학문과 예술이 결집된 교육문화기반 구축
 -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수단의 다양성 확보 등으로 미래형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첨단 교통·정보 네트워크 형성

□ 지표설정

- 자연적 증가인구는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하여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을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산정
- 사회적 증가인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사업이 결정된 경우만 반영
- 목표연도 인구계획은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인구를 합산하여 추계

(1) 자연적 증가인구

- 구미시 현재인구를 기준으로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으로 추정한 결과 목표연도 자연적 증가인구는 434,211명으로 추정

<자연적 증가인구>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자연적 증가인구	404,920	420,647	434,211	

(2) 사회적 증가인구

- 구미4산단 및 경제자유구역, 구미5산단, 확장단지 등 계획수립시 승인된 계획인구를 반영하여 167,060명으로 추정

<사회적 증가인구>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사회적 증가인구	—	67,924	167,060	
구미4산단, 경제자유구역	—	40,000	86,500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 지표적용
구미5산단	—	19,430	72,066	유입율 60%적용
확장단지	—	8,494	8,494	유입율 30%적용

(3) 목표연도 계획인구

- 자연적 증가인구 434,211명과 사회적 증가인구 167,060명을 합하여 2020년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는 약 600,000명으로 산정

구 분	2010년 (기준년도)	2015년	2020년 (목표연도)	비 고
계획인구산정	404,920	≒489,000 488,571	≒600,000 601,271	
자 연 적 증 가	404,920	420,647	434,211	
사 회 적 증 가	—	67,924	167,060	

(4) 생활환경지표

- 당초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550,000명에서 금회 600,000명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각종 생활환경지표를 재설정

구 분		단위	계획지표		
			2010	2015	2020
주택	가구당 인구	인	2.8	2.7	2.6
	총가구수	호	145,577	181,111	230,769
	주택보급률	%	112	113	115
	주택수	호	162,445	204,656	265,385
상수도	계획인구	인	404,920	489,000	600,000
	급수보급률	%	98	98	99
	급수인구	인	396,381	479,220	594,000
하수도	계획인구	인	409,792	489,000	600,000
	보급률	%	94.2	95	98.1
	처리인구	인	385,975	464,550	588,600
	1인 1일 오수량	ℓ/인/일	383	383	425
	발생오수량	m³/일	147,828	177,923	250,155
공원	근린공원	개소	55	63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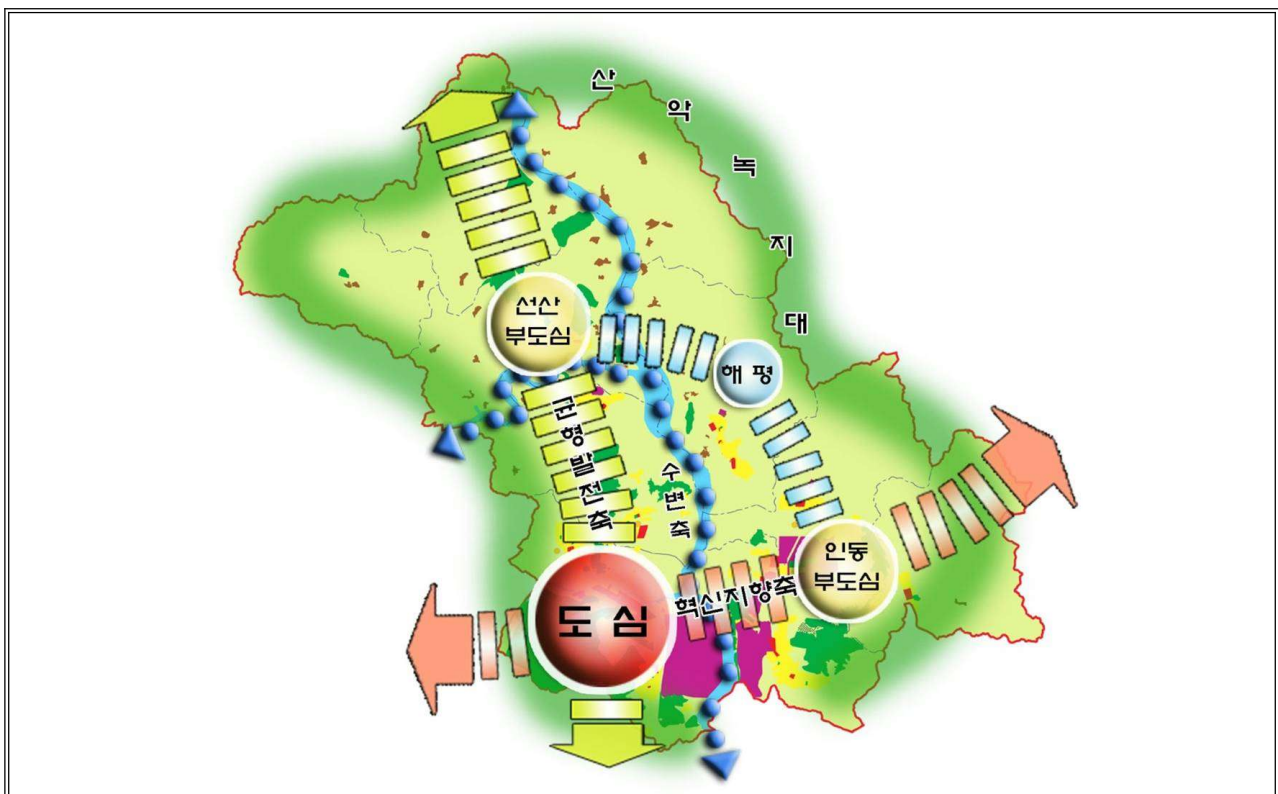
□ 도시공간 구조 구상(변경없음)

- 산업단지 및 도심배후기능의 부도심 강화 방안의 공간구조로, 기존의 도시 발전축을 수용하며 도심과 부도심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을 추구하는 「중심지 강화형」
- 개발주축은 동서축으로 하여 기존 도심과 부도심을 중심으로 시가화지역의 확장을 집중하고 생활권별 특성에 적합한 개발 유도

<발전축 및 보전축 구상>

공간구조		·1도심(기존도심), 2부도심(인동,선산), 1지구중심(해평)
발전축	혁신지향축	·도심과 부도심의 산업기능 집적화로 구미시 구심적 역할 강화
	균형발전축	·배후주택 및 전원주택단지, 문화관광단지, 농업지원단지 등 도심배후기능
보전축	산악녹지대	·금오산, 천생산, 청화산 등을 연결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 억제 및 자연환경 보전
	수변축	·낙동강, 감천, 한천 중심으로 수질오염방지와 도시환경축 중심기능

<도시공간 구조>



□ 생활권 계획

- 구미시 전역을 1개 대생활권으로 계획하고, 중생활권은 계획적 개발의 기준 단위로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전략적 중심지로 설정하여 각종 편의시설 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주요간선도로 확·포장 등 교통여건, 토지이용, 주민의 생활패턴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선산중생활권, 구미중생활권, 인동중생활권 등 3개의 중생활권과 12개의 소생활권으로 계획하고, 행정동의 경우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생활권별 개발방향>

구 분	개발방향	계획인구(인)
합계	—	600,000
선산중생활권	·도심배후 주거기능 및 특화농업, 관광기능 강화	96,000
인동중생활권	·신성장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배후기능, 역사 관광 및 특화농산물 거점	228,000
구미중생활권	·구미 중심기능 강화	276,000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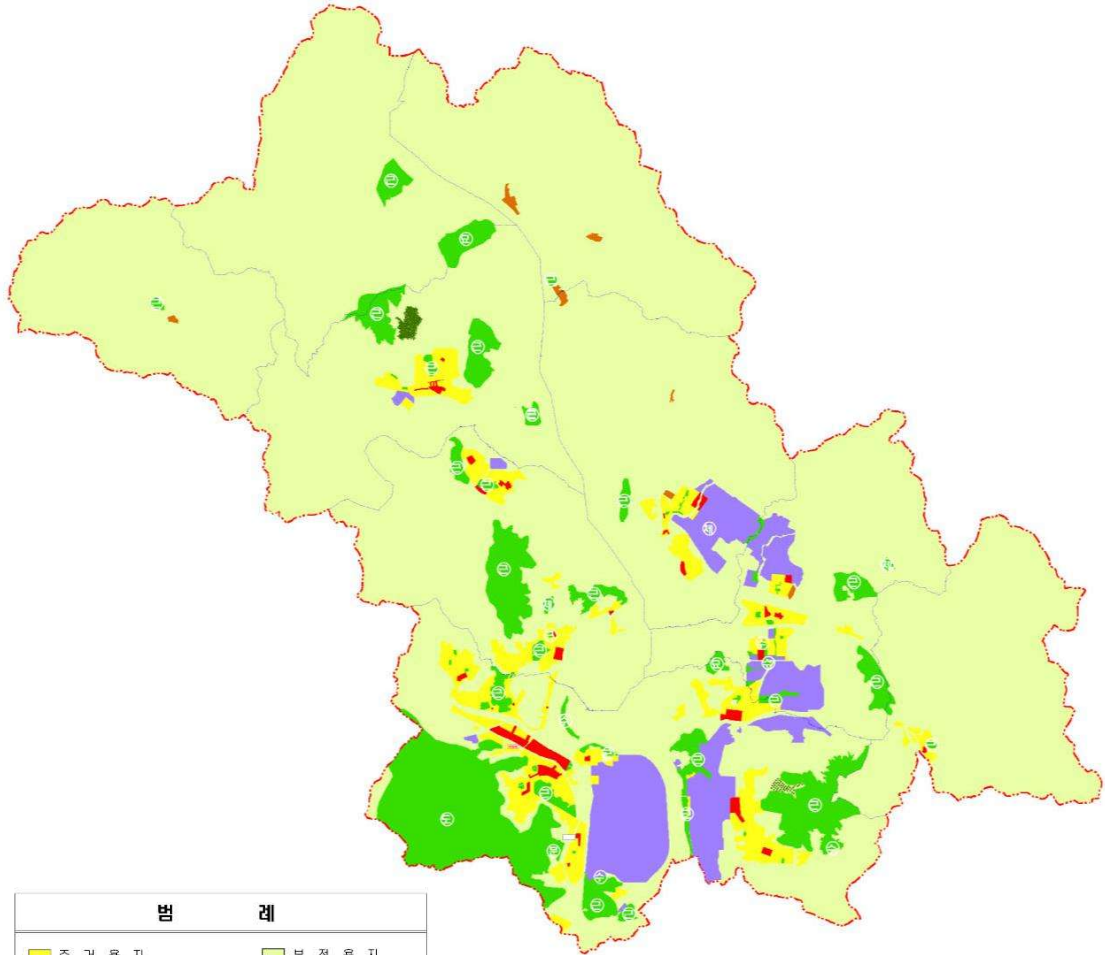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용지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항을 반영 (45.935km² → 85.623km², 증 39.688km²)
-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총량과 주 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으며,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에서 기 승인된 물량 중 시가화용지로 변경된 물량 이외에 잔여물량 유지
 - 잔여물량 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은 향후 개발수요(신평동 구미 IC 주변 완충녹지 해제지역 등)에 대응토록 총량으로 관리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k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616.251	감) 0.703	615.548	
시가화 용지	소 계	45.935	증) 39.688	85.623	
	주거용지	19.074	증) 6.988	26.062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면적 반영
	상업용지	3.075	증) 0.471	3.546	
	공업용지	20.398	증) 7.250	27.648	
	관리용지	3.388	증) 24.979	28.367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근린공원 반영
시가화 예정용지	계	33.422	감) 18.536	14.886	
	주거용지	8.73	감) 5.118	3.612	미결정용지 잔여물량 유지
	상업용지	0.485	감) 0.380	0.105	
	공업용지	17.014	감) 12.312	4.702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	7.193	감) 0.726	6.467	잔여 물량 유지
보전용지		536.894	감) 21.855	515.039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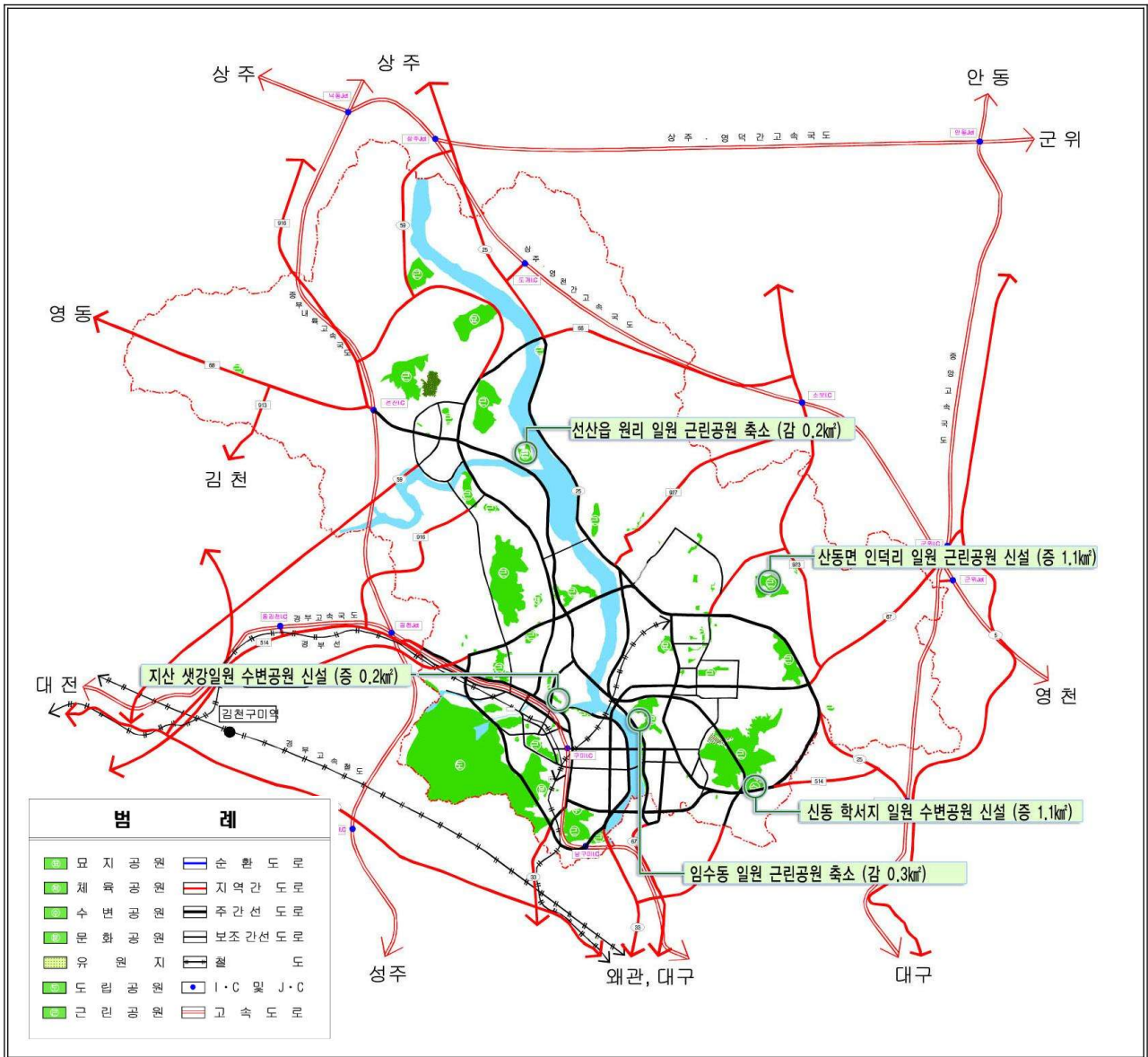
□ 공원·녹지계획

-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사업 승인, 지역현안사업 등 공원녹지체계를 고려하여 당초 42개소인 공원을 29개소 증가한 71개소로 계획
- 주요 변경사항은 공원녹지 체계를 고려하여 수변공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근린공원 2개소는 축소조정
 - 지산 샛강일원 수변공원 신설 (증 0.2km²) : 지산샛강 수변공원 조성
 - 산동면 인덕리 일원 근린공원 신설 (증 1.1km²) : 산림문화 생태공원 조성
 - 신동 학서지 일원 수변공원 신설 (증 1.1km²) :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 선산읍 원리 일원 근린공원 축소 (감 0.2km²) : 낙동강 활성화 계획 반영
 - 임수동 일원 근린공원 축소 (감 0.3km²) : 국가방위 지원사업 반영
- 목표년도 1인당 공원면적은 당초 48.49m²/인에서 2.84m²/인 증가한 51.33m²/인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청정생태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

<공원·녹지계획표>

구 분	2020년(기정)		2020년(변경)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1인당 공원면적	48.49m ² /인		51.33m ² /인	
공원 합계	42	28.866	71	30.800
근린공원	39	26.67	57	27.703
체육공원	1	0.166	3	0.269
수변공원	—	—	8	0.533
문화공원	—	—	1	0.245
묘지공원	2	2.05	2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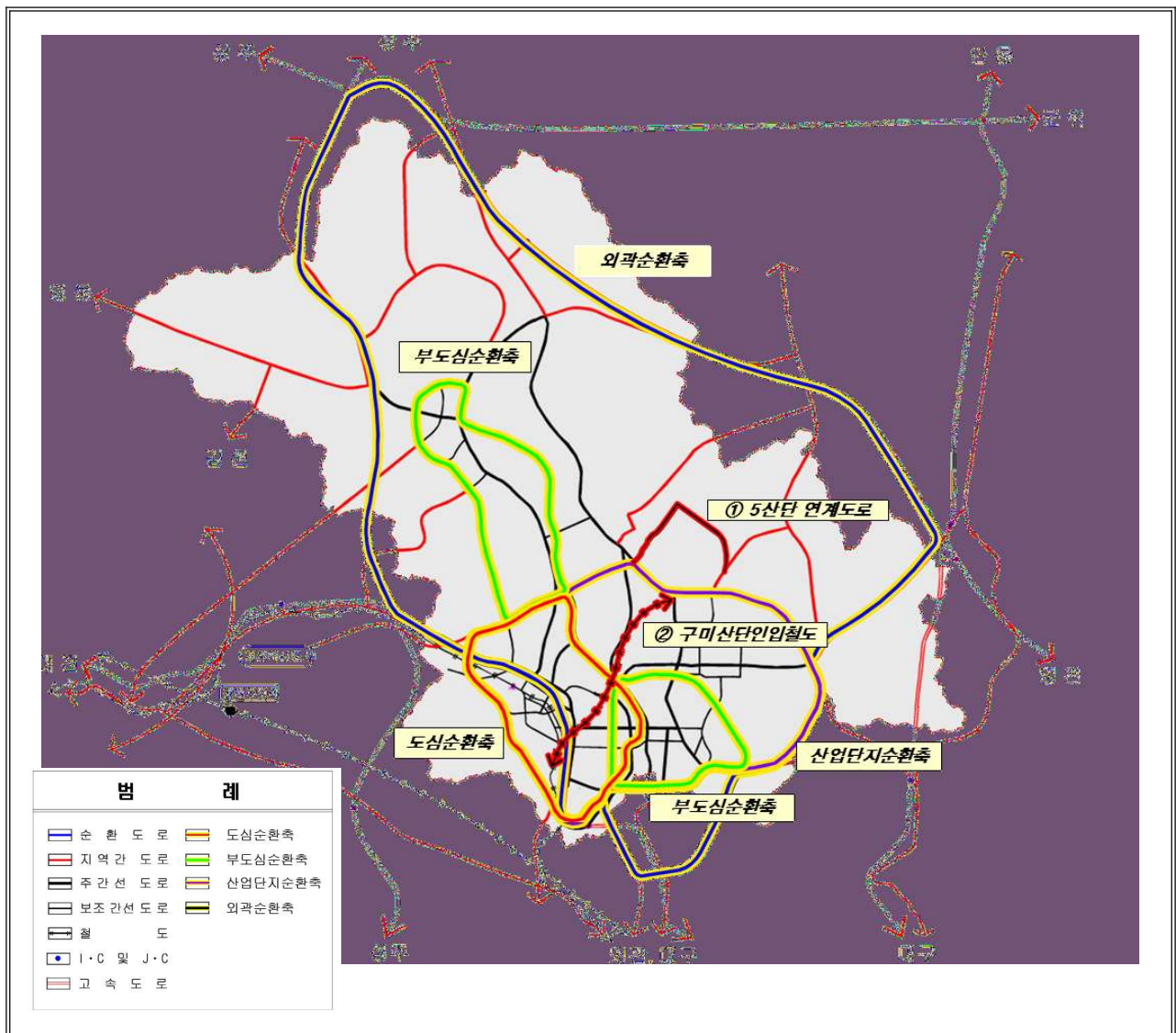
<공원·녹지 계획도>



□ 교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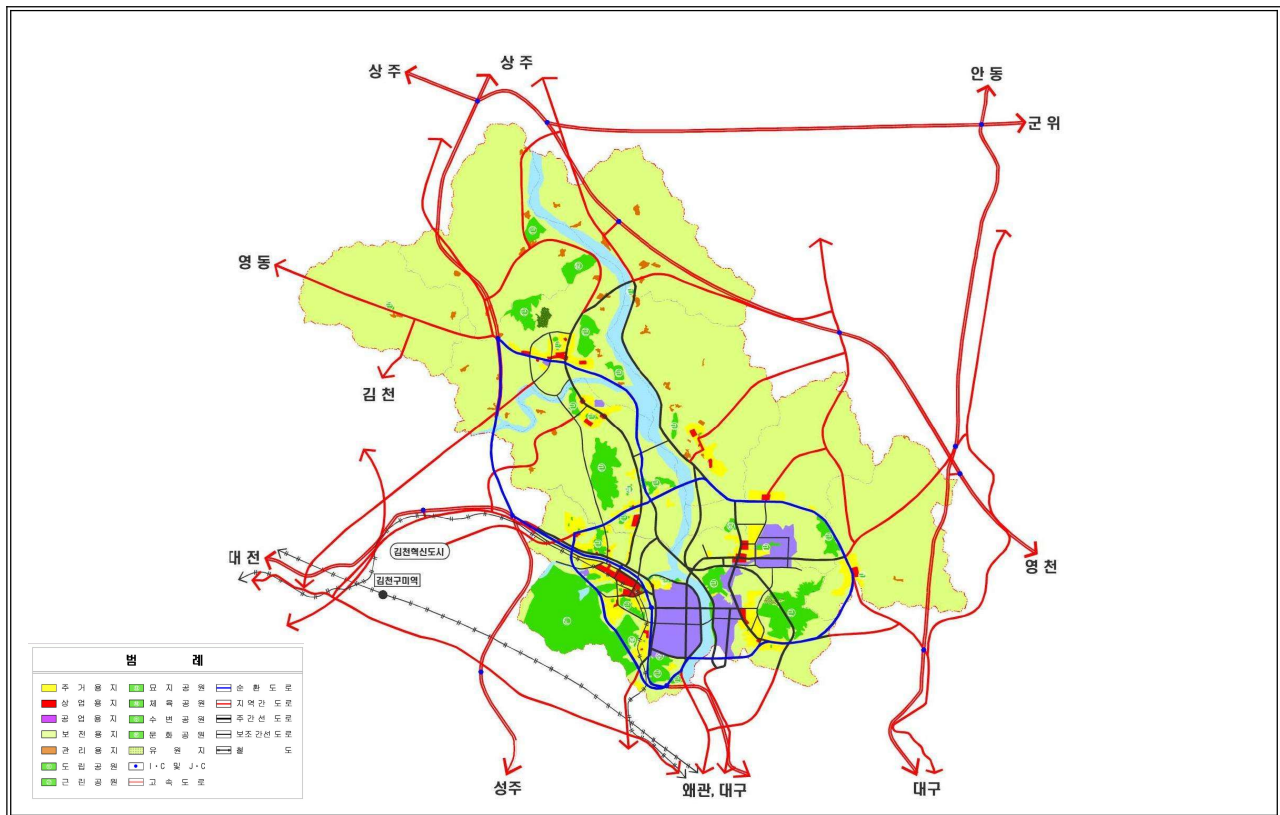
- 도시공간구조와 연계한 순환도로망 구상,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 5개 순환도로망 : 생활권을 고려하여 도시공간과 균형을 이루는 도로망 구축
 - 도심순환축, 부도심 순환축(2개망), 산업단지 순환축, 외곽순환축
- 교통계획
 - ① 5산단 연계도로 반영(6차로, 7.5km)
 - ② 구미산단 인입철도 반영(사곡~구미산단, 11km)

<교통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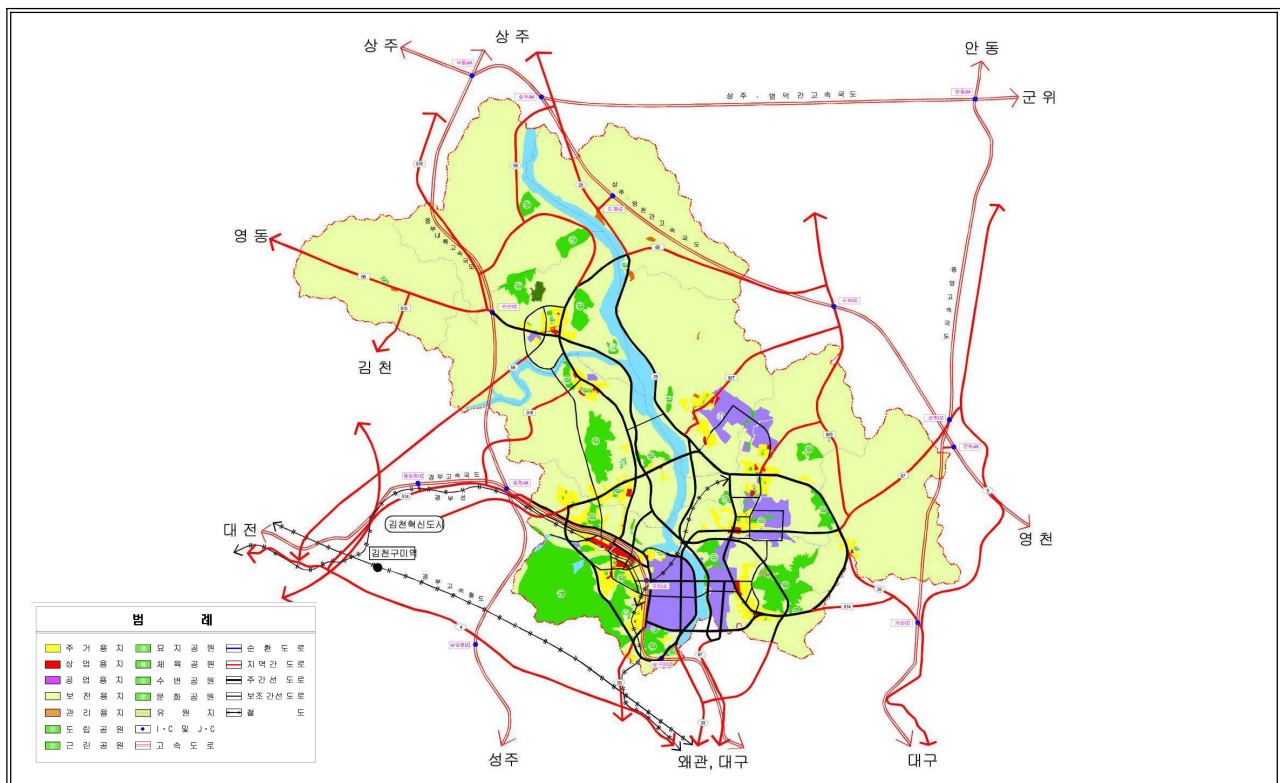


□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도시기본계획 구상도(기정)>



<도시기본계획 구상도(변경)>



《참 고 사 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2-2-2.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질 때에는 별도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5.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1) 도시·군기본계획은 공동체의 합의이며 주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도시·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3) 재수립시에는 기존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6-3-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인구지표 및 이와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과 당해 시·군의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의견을 포함하되, 입안된 도시·군기본계획(안)의 내용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